

[별지 제 9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2017년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채권자인 동우건축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2017년 3월에 학교법인의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학교법인은 2017년 10월에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년 10월 25일에 포괄적 지급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결정 및 2017년 11월 8일에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학교법인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오에 따라 2018년 2월 23일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학교법인은 특별항고를 2018년 3월 28일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운영성과 자금수지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감사 최지광 (공인회계사)



피감사자(입회인)
이사 이상규

